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37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민병덕・이개호・이해식

강훈식 · 강준현 · 이광희

이병진 • 이기헌 • 박성준

김영호 • 이훈기 • 이수진

이재강 • 이상식 • 정진욱

김현정 • 박민규 • 김재원

이언주 · 윤후덕 · 박홍근

서미화 · 이강일 · 황운하

서영교 · 복기왕 의원

(2691)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불리고 있음. 이 중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특히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함.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순신 정 신의 역사·문화적 평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 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이순신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 신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을 두어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장 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남해"는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 34° 1 7′33.09″N, 126° 31′26.02″E)에서 225°로 그은 선과 고두말(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 35° 09′24.66″N, 129° 10′54.51″E)에서 135°로 그은 선 사이의 남측 해역을 말한다.
- 2. "이순신해"는 남해와 전남 목포 고하도(북위 34° 46 ′ 동경 126°22 ′)에서 남해의 서쪽 끝 경계 사이의 해역을 포함한다.
- 3. "기본계획"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되어 5 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 4. "이순신기념사업"이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이순신해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 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에 대하여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시설과 기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 간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념사업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념사업의 시행

- 제5조(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념 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2. 기념사업 목적

- 3. 기념사업의 거점지구의 위치
- 4. 기념사업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념사업의 추진 기구

- 제6조(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이하 "이순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이순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이순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관계 시 · 도지사
- 3.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순신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역사·문화·환경·해양·관광·휴양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기념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이순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 ⑦ 이순신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이순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①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③ 추진단에 단장 1명과 과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과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④ 추진단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장의 업무)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장은 기념사업과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이순신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념사업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4.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